

제9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 개최

본 협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정 성립(21건)

○ 일진전기(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수급사업자인 (주)진흥정밀 등 2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제3자)가 신고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은 조정안대로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주)진흥정밀 등 2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4,292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진광이앤씨(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수급사업자 경성기업 등 16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제3자)가 신고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은 조정안대로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성기업 등 12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11,335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선도전기(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수급사업자 (주)대호기공 등 2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제3자)가 신고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은 조정안대로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주)대호기공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7,986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주)비츠로테크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수급사업자 경성기업 등 2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제3자)가 신고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은 조정안대로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성기업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8,757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선일전기공업(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수급사업자 금륜ENG 등 3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제3자)가 신고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은 조정안대로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금륜ENG 등 3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33,955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보성파워텍(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수급사업자 경인공업(주) 등 13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제3자)가 신고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은 조정안대로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인공업(주) 등 7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21,543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신성산전(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수급사업자 경성기업 등 2개사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제3자)가 신고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은 조정안대로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성기업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1,355천원을 지급하여 분쟁이 종료됨.

○ 부산방직공업(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클레임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US\$ 12,373.52)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 대한 클레임(US\$ 32,212) 청구를 포기하고, 신고인은 피신고인에 대하여 납품대금 잔액(US\$ 12,373) 청구를 포기하여 양 금액을 상계하기로 하는 조정안대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

○ 가아전자(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앰프용 PCB(키판)를 제조하여 납품과 관련하여 일부 제품은 사장된 모델이라며 하도급대금(US\$30,284.26) 지급을 거절하며 내국신용장(LOCAL L/C)을 개설하여 주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양 당사자는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을 US\$ 30,284.26(한화 32,324천원)으로 정산 합의하고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삼성물산(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폐수펌프 6 SET를 사양변경을 이유로 재입찰을 통하여 타업체를 선정하고, 펌프 제작에서 발생한 비용 및 손실금 7,000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양 당사자는 조정안대로 펌프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손실금을 3,000천원으로 정산 합의하고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주)삼익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신고인의 부도를 이유로 공사를 타절케 하고, 타절정산금 중 일부인 57,760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타절정산 미지급금 57,76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영동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신고인의 부도를 이유로 공사를 타절케 하고 타절정산금 110,000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신고인이 채권 양도한 금액(105,036천원) 중 직원들의 임금으로 양도한 11,685천원만 지급하라는 조정안대로 합의하고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세종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104,390천원)를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어음할인료를 80,000천원으로 정산 합의하고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주)쌍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납기지연과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내국신용장 및 하도급대금(한화 약 70,000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신고인은 납기지연과 제품의 하자 문제에 관하여 일부 과실을 인정(일부품목반품)하고 조정안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US\$ 46,674.52(W53,045천원)로 정산하고 피신고인은 내국신용장(유효기일 2000. 11. 10)을 개설하여 발급함으로써 조정 성립.

○ 성진종합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자 피신고인도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26,079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4회에 걸쳐 각각 1,000천원, 9,000천원, 9,000천원, 7,079천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종료 됨.

○ (주)티이에이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에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60%만 변제하겠다고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피신고인의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채무변제안을 수용, 하도급대금(117,851천원)의 60% 금액인 70,140천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1차로 수령한 47,140천원의 나머지 23,000천원은 2000. 12. 2. 지급하기로 하여 조정 성립.

○ 신세대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신고인의 매입세액 위장신고로 피신고인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과징금 120,000천원을 추징당하였음을 이유로 미정산된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7,721천원)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미지급금액을 62,279천원으로 정산하고 어음할인료 7,721천원 등 70,00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한국차량공업(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신고인의 일방적인 거래중단으로 손해(137,070천원)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정산합의금 61,592천원을 2회에 걸쳐 34,735천원 및 26,856천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신고인의 거래중단으로 인한



손해액(132,107천원) 중 5,218천원은 신고인이 배상하기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

○ (주)성화종합건설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하도급 대금 90,000천원을 미지급하고 신고인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정산해 주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미지급금을 133,000천원으로 정산하고 직불 금액(82,108천원)을 제외한 50,891천원을 2회에 걸쳐 지급기로 합의하고, 피신고인은 1차로 2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대금 30,891천원은 2000. 11. 20. 지급기로 하여 합의하여 조정 성립.

○ (주)노벨과개미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자체 설비도입으로 인한 목형 회수 과정에서 신고인이 반납한 목형의 일부가 훼손 및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100,460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신고인이 목형을 원상회복하고 피신고인도 대금(100,46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덕암출판사(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모회사인 (주)노벨과개미와 신고인간 목형 회수 과정에서 신고인이 반납한 목형의 일부가 훼손 및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신고인이 하도급대금(47,659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모회사와 신고인이 합의하자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47,659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조정 불성립(10건)

○ (주)태사자건설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추가공사대금 210,011천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이 정산에 응하지 않고, 조정기한이 경과되어 조정 불성립.

○ (주)센서스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42,824천원을 미지급했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여 조정 불성립.

○ (주)센서스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79,851천원을 미지급했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여 조정 불성립.

○ 서울차체공업(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하도급대금 63,945천원을 미지급한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이 화의조건 중 채무변제조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여 조정 불성립.

○ 한국가스기술공업(주)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자체 설계오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486,708천원을 감액했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기한이 경과되어 조정 불성립.

○ 녹우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하도급대금 9,000천원을 미지급했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하여 조정 불성립.

○ 영림종합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하도급대금 360,000천원을 미지급했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여 조정 불성립.

○ (주)대유토건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하도급대금 335,920천원 및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여 조정 불성립.

○ (주)남성조선에 대한 수리하도급 분쟁

- 선박 수리위탁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39,161천원)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137,408천원)을 부당 감액했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조정 불성립.

○ (주)남성조선에 대한 수리하도급 분쟁

- 선박 수리위탁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39,679천원)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282,623천원)을 부당 감액했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여 조정 불성립.

◆ 조정 불개시(2건)

○ (주)남천산업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의 연간매출액이 986,860천원으로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서 정한 연간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 신고서 반려.

○ (주)화성아이티씨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의 연간매출액이 10,642천원으로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서 정한 연간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 신고서 반려.